

[변호사모의시험 후기]

이론의 학습은 물론 실무적 내용까지 대비해야 할 필요성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를 나흘간 치루고 나서의 후기-

허 중 혁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로펌 실무수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심화실무수습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수습
- 현재 중앙대 로스쿨 3학년 재학 중

I. 들어가며

2011년 1월19일부터 1월22일까지 4일 간의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가 전국 로스쿨에서 일제히 시행되었고, 저도 학교에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그 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19일 첫날은 공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사례형 주관식과 기록형 시험이 있었습니다. 20일 둘째날은 형사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사례형 주관식과 기록형 시험이 있었습니다. 21일 셋째날은 민사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사례형 주관식 시험이 있었고 다음날인 22일 오전에는 민사법 기록형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모의고사 응시생이 현저히 적어서 시행도 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 기사를 보신 교수님들께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

셨지만, 다행히 저희 로스쿨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4 일 동안의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방학 중에 4일의 기간 동안 나와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실무수습을 하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등의 대다수 재학생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현재까지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가 공청회 자료라든가 제1회 모의고사 문제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 때문에 열심히 시험을 본 학생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2번의 모의고사를 경험하고 쓰는 이 글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우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2차까지 경험해 보고 2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거치면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라고 약칭하겠습니다) 모의고사와 제2회 모의고사 양자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가감 없이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로스쿨에 관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봅니다. 이제는 오래 된 수년 전의 사법시험 때의 힘들었던 순간도 회상해 보았습니다. 로스쿨생들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어떻게 든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는 각 계각층에서 그 문제의 난이도와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재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대비전략에 대한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현재 시험에서,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로스쿨 재학생의 사건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하시고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사법시험과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체력적 부담

사법시험 2차 시험도 나흘간의 힘든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변시 모의고사에서 예시된 대로 실제 시험이 진행된다고 상정한다면 그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고 늦어도 4시에는 시험이 종료되어 저녁에 그 다음날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의 시험을 뛰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법 한 영역에서도 오전에는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후에는 사례형으로 2시간의 시험이 끝난 후 1시간의 휴식 후에 기록형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 6시에야 그날 시험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시험 시간이 더 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의시험을 치렀던 재학생들은 단지 모의고사라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감이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시험이 끝나고는 다음날 시험 준비보다도 휴식과 잠에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체력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의 공부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평소에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전 과목에서 객관식을 대비해야 하는 점

사법시험에서는 1차 과목에서 헌민형 3과목과 선택과목 한 과목만 선택형 객관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선택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 사이에는 몇 달 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시의 경우는 시험 당일 나흘간 선택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이점은 사법시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국면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민사법의 경우에 오전에 선택형 시험문제로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영역에서 출제된 70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2시간에 7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의 압박도 쉽지만, 출제영역의 광범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 대비해야 하는 양의 압박에 있어, 주관식만 대비하는 사시2차에 비해 더욱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의 변시 선택형 문제는 헌민형의 기본 3법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출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 하나하나도 길이가 길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만, 민사소송법과 상법의 객관식 문제를 미리 접해 본 로스쿨 재학생들은 거의 없고 기존 수험서에서도 이들 과목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행정판례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한데, 그나마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경찰시험과 공무원 시험 때문에 객관식을 다루는 수험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Ⅲ. 기존의 이론공부 외에 실무적 내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1.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법문서 작성

보통 로스쿨 재학생들의 2학년 2학기 과정까지는 법문서 작성이란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과목에서 민형사의 실무서식을 작성하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민사의 경우 소장과 답변서라든가 형사의 경우 보석허가청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는 시험을 이미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았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형사 기록형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의 작성이, 민사 기록형에서는 소장의 작성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른 제 경험을 반추해 보건대,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새로운 변화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의 실무적 내용에 관한 출제입니다. 공법의 경우는 기록형 시험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기록형 시험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당황한 정도가 조금 덜했습니다.

2. 형사법 사례형의 충격

그러나 형사법의 사례형 시험에서는 실무 내용을 알지 못 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로스쿨 재학생들은 오히려 기록형 문제에서보다 사례형 문제에서 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의 사례형 1문은 답안지에 적용법조를 특별법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검찰실무교재의 3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용법조의 기재순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현직 검사님들이 직접 강의하시는 검찰실무 수업과 연수원 교수님들이 강의하셨던 형사소송실무 과목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임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두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 학생들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생소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청강이라도 해야겠다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민사법 사례형도 요건사실론

지난 여름의 법원실무수습 과정에서 연수원에서 하는 요건사실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재학생들이 연수원에서 하는 요건사실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민사법 사례형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연수원 요건사실론이었습니다. 기존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교과서만으로는 완전한 답안 작성이 어려웠고, 연수원 교재인 요건사실론의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완전한 답안 작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존 사법시험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기본서 위주의 공부에서 좀 더 나아가 연수원 교재까지 탐독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V. 학설보다는 판례. 판례도 리딩 케이스 중심으로

이러한 출제방식은 종래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방식, 즉 신림동의 고시학원에 몰려서 시험을 준비하던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가 철저히 신림동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유명 교수님의 교과서를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학원의 부교재에 각 학설의 논의지점을 비교분석하여 시간을 줄여 주고 순환과정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학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스쿨에서의 강의만으로 이번 모의고사 전부를 커버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로스쿨에서의 현직 실무가 분들의 강의만큼 실무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강의를 현재의 고시학원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이 변시의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2학년이나 3학년 때에 개설되는 검찰과 법원의 강의 및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풀어 보면, 과거 사법시험보다 학설에 따른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례 위주로 출제하는 점이 분명했으며, 그 출제된 판례도 철저히 리딩 케이스 중심이었고 구석진 곳에 있는 판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공부할 때에도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것을 철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법에서 출제된

원자력발전소 사전허가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대법원 판례의 심층적인 부분까지 터치하고 있었고, 그냥 처분의 성질만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점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판례를 접해 보되, 특히 중요한 판결들은 깊이 있게 논점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V. 마치면서

지금 로스쿨 1기 재학생들은 변시 준비하랴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으랴 학점을 관리하랴 정말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법조시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변시 점수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시 성적이 공개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3년을 공부한 바를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변시라는 점은 명확하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시 문제의 방향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 로스쿨의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몇 분의 교수님들께 조언을 요청하여 보았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의 대략적인 취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 실력을 쌓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학실력이나 경력 등 스펙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 법조인이 오랜 동안 실무에서 인정받고 성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학 실력이 튼튼해야 할 것이고, 변시의 출제 경향도 그러한 기본적인 법학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출제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도 제1회 모의고사처럼 시험적인 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시험에서 이번 모의고사와 똑같은 유형으로만 출제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출제경향이 이러하니 이것 위주로 공부한다는 식의 편협된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남은 기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모의시험에 대한 부족한 후기를 마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모두의 좋은 결과를 기원드립니다^^